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5-143
----------	-------

제출년월일 : 2007. 9. .

제 출 자 : 김정자 의원 외 5인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 로, “「지방자치법」 제33” 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 로 함.(안 제1조, 제10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재임기간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8조 ----- ----- ----- ----- -----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겸직금지) ----- 「지방자치법」 제 3 5 조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5조(경직 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

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